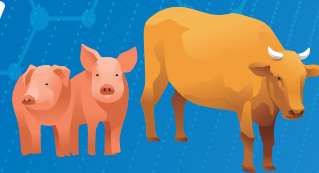


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.



'20년 10월 8일부터 축산물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(농장명, 대표자, 소재지 등)가 공개됩니다.

*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개정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농장정보가 공표됩니다.



축산농장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허가된 제품에 대해 안전사용 수칙(휴약기간, 주의사항 등)을 준수하여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합시다.



정부는 도축장에서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하며, 검사결과 적합된 축산물만 출고합니다.

* '20년 9월 30일부터 모니터링 검사도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해당 축산물의 출고가 보류되며, 부적합시 도축장(현장)에서 폐기됩니다.



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절차도

